

대통령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의2제2호 중 “교육부장관이”를 “교육부령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,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-